

『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7일

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거의동 일원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의 명칭, 위치, 기간, 범위, 시행자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7조)
-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,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, 제9조)
-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-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 ~ 제18조)
-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4조 ~ 제3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」은

-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,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